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662

발의연월일: 2024. 11. 18.

발 의 자: 민홍철 · 문대림 · 이기헌

한준호 • 한정애 • 김준혁

문진석 · 김문수 · 백혜련

허성무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담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현재 일부 민간보험회사에서 반려동물 진료 관련 보험상품을 출시·판매 중이나, 보험료 산정을 위한 진료항목이나 진료수가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많지 않고 보험료 역시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가입률이 저조함. 또한 이러한 금전적 부담에따라 반려동물의 양육을 포기하고 유기하는 등의 사례가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현행법의 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병원의 진료비용과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공개할 수있는 근거(2023.1.5. 시행)와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고시하도록 하는 근거(2024.1.5. 시

행)가 마련되었음에도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위한 공적보험제도의 도입 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았음.

이에 공적보험으로서의 반려동물진료보험에 관하여 보험 대상의 선정, 보상하는 질병 또는 상해와 진단·치료비용의 범위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를 두어 반려동물 진료 관련 공적보험을 체계적으로 구축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반려동물 소유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반려동물의 보건 증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등).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반려동물진료보험"이란 반려동물(「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질병 또는 상해에 대한 진단·치료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제1장에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조의3(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 ① 반려동물진료보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1. 반려동물진료보험 목적물의 선정에 관한 사항
 - 2. 반려동물진료보험에서 보상하는 질병 또는 상해의 범위 및 진단 · 치료 비용의 범위에 관한 사항
 - 3. 보험료율의 산정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반려동물진료보험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1. 반려동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3급 공무원 또 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2. 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3. 제23조에 따른 수의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4. 「보험업법」 제17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반려동물이나 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⑥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 <신 설></u>	5. "반려동물진료보험"이란 반
	려동물(「동물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을 말
	한다. 이하 같다)의 질병 또
	는 상해에 대한 진단·치료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u><신 설></u>	제3조의3(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
	회) ① 반려동물진료보험에 관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
	관 소속으로 반려동물진료보험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u>를 둔다.</u>
	1. 반려동물진료보험 목적물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반려동물진료보험에서 보상
	하는 질병 또는 상해의 범위
	<u>및 진단·치료 비용의 범위에</u>
	<u>관한 사항</u>

- 3. 보험료율의 산정에 관한 사 <u>항</u>
- 4. 그 밖에 반려동물진료보험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
 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 ③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 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 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 어야 한다.
- 1. 반려동물 관련 업무를 담당 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2. 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의 3 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에 속하는 공무원

- 3. 제23조에 따른 수의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4. 「보험업법」 제175조제1항 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반려 동물이나 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⑥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렁렁으로 정한다.